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5호
2. 발 의 자 : 김경우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 4.
4. 회부일자 : 2019. 1. 7.

II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의 처분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김경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15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¹⁾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²⁾에게 의뢰하여

1)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7조제4항은 이와 같은 감정평가의 자격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사를 배제하는 등 상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같이 감정평가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34.,2019.1.3.)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

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